1 대상자 선정 기준

가 대상자

1) 건강보험(차상위)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

– 차상위 계층(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, E 해당자)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중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

※과거 장애등록 여부에 따라 구분자 코드 'E'와 'F'로 구분되던 것을 'E'로 일원화되었지만, 일부 'F'코드가 남아있는 상황이라 'F'코드로 구분된 경우도 지원 대상 차상위에 포함함

2) 건강보험가입자

– 소득·재산 조사결과가 적합한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

○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함

※1월 1일 기준 만 17세이나, 해당연도 내에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더라도 지원 가능

○ 성인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과 중복되어 등록·지원 신청할 수 없음

○ 외국 국적인 자(난민협약에 의한 난민, 북한이탈주민,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제외) 및 국외 이주자 제외

나 일반 원칙

1)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아 암환자는 매년 소득·재산 조사를 수행함

※매년 소득·재산 조사 수행, 가족관계증명서 및 소득·재산 관련 서류 제출을 위해 보건소장 권한 등록 위임 불가

2) 소득·재산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사회보장급여 통합업무 안내에 따름

※<202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> 참고

3) 소득·재산조사는 보건소 담당자가 조사 대상 가구원을 선정하여 관할 통합조사팀에 의뢰, 통합조사팀에서 소득·재산조사를 수행하여 조사 결과를 보건소에 통보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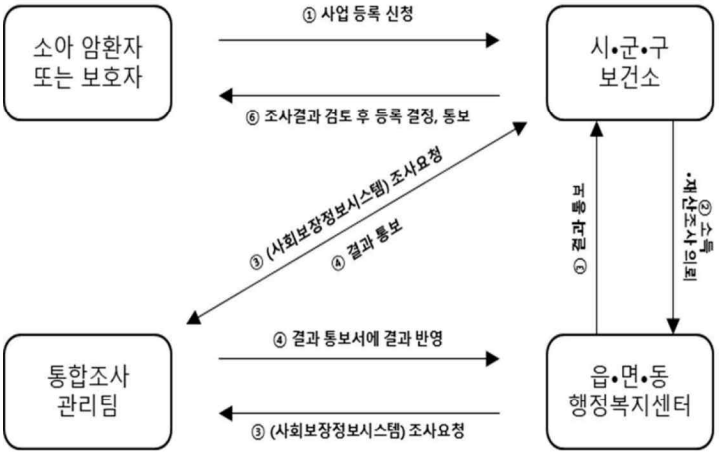
※소득·재산조사 관련 문의는 관할 통합조사팀으로 이루어짐

4)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소득은 '소득평가액'을 의미함

※소득 산정 시 부양비, 추정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

5)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변경된 자료가 있는 경우,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관할 통합조사팀에 제출함

6)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서 정한 기준 이하로 함



다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·재산 기준

○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

<2022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>

(단위 : 원)

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	8인
2,333,774	3,912,102	5,033,641	6,145,296	7,229,418	8,288,405	9,336,710	10,385,016

※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, ('22년 기준 중위소득[4] 120% 이하)을 적용한 값임

※8인 이상 가구의 경우, 1인 증가 시마다 1,048,306원씩 증가

<2022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>

(단위 : 원)

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	7인 가구	8인 가구
217,965,813	255,815,396	282,710,820	309,369,209	335,367,338	360,762,705	385,901,928	411,041,151

※8인 이상 가구의 경우, 1인 증가 시마다 25,139,223원씩 증가

※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%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

4)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2(기준 중위소득의 산정)

라 구비서류

제출 목적	제출 서류	비 고
가구원 확인	• 실종 등의 신고접수서 등	– 행방불명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 ※ 전산 확인이 가능한 군복무확인서, 재소증명서, 출입국사실증명서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제출 서류 제외
소득확인	• 고용·임금확인서 • 월급명세서	– 근로소득 파악
	•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• 퇴직증명서	– 취업·퇴직 사실 확인
	• 소득금액증명원 • 휴·폐업 확인서	– 사업자 소득 파악 ※ 사업자등록증 전산 확인 가능
	•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 관련 자료	– 어업소득 파악
	• 임산물 유통기관 판매기록	– 임업소득 파악
	• 임대차계약서*	– 임대소득 파악(건물·상가, 본인 거주 외 주택 등이 조회된 경우)
	• 진단서·의료비 영수증	– 소득평가액 산정 시 가구특성 지출비용으로 실제 소득에서 차감 처리
	• 지출실태조사표 •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	– 소득파악 곤란자에 대한 소득파악(특히, 보장기관 확인 소득 부과대상자인 경우 징구)
재산확인	• 임대차계약서(전·월세계약서)*	– 임차보증금
부채	• 법원판결문, 화해·조정조서	– 개인 간 부채 확인
	• 임대차계약서*	– 임대보증금
급여계좌 확인	• 통장 사본	– 지급계좌 등록 및 실명 확인

※ 주거용 이외 임대차계약서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었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징구

2 지원 암종

○ 악성 신생물(C00-C97)

○ 제자리암종(D00-D09)

○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(D37~D48)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, D46, D47.1, D47.3, D47.4, D47.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

3 지원 금액

○ 백혈병(C91-C95) : 연간 최대 3,000만 원(진료발생일 기준)까지 지원

○ 기타 암종(C00-C90, C96-C97, D00-D09, D37-48 중 일부) : 연간 최대 2,000만 원(진료발생일 기준)까지 지원

- 기타 암종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,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후 연도에도 연간 최대 3,000만 원까지 지원

※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상한금액까지 지원 신청 가능

※ 2개 이상의 암을 동시에 지원할 경우에도 연간 상한금액 내에서 지원